

토 론 문

김지연(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 발표문에서 특히 인터넷게임 사전동의제에 대한 분석(p. 8-10)은 압축적이면서도 통찰적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제도와 인터넷게임 사전동의제를 비교한 도표는 현행 사전동의제가 “민법상의 미성년자제도의 기본 법리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에 이미 반대하고 있었는데도 이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사전동의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게임 사전동의제는 근대자유주의국가의 법적논리와 상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그래서 어떻게 이 제도가 그런 결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제도가 입법절차를 거치는데 성공하고, 위헌소송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하는 의문입니다. 상위법체계와 충돌하는데도 이 제도가 법제도 안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법논리의 내재적 작동을 억누를 만큼의 강한 외재적 힘이 작동했다는 의미가 아닐까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외재성의 후보로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포, 인터넷기술에 대한 혐오, 자녀교육에 대한 압박감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힘의 기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드워프들을 내쫓고 그들의 성과보물을 차지해버린 스마우그(호빗이야기의 용)처럼, 때론 비합리적이면서 때론 강력한 ‘그 힘의 정체’를 해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대적 합리성만으로는 스마우그를 길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도구주의 관점은 기술혐오를 잘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국가후견주의에 대해서; 발표문은 국가후견주의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국가후견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적 섯다운제는 청소년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다.”(p. 5)

“청소년 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는 ‘청소년의 자율성 요건’과 ‘가족의 자율성 요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p. 14)

저는 '국가후견주의'가 '부모후견주의'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후견주의는 기본적으로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태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태도는 아동을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완전한 독립적 인격체로 상정하고 있는 근대적 관점과 상충합니다. 따라서 후견주의적 태도는 아동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며, 그것이 부모라 하더라도 아동의 권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후견주의적 태도가 부모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공적 시스템)가 부모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후견주의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시민)조차도 '미숙한 아이'를 다루듯이 하는 것까지도 승인하는 것입니다.(국가가 아동의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른의 부모역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가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인터넷게임 사전동의제가 제기하는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은, 국가와 시민의 상호적 관계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험난해졌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기술에 대한 공포가 국가후견주의에 대한 의존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가후견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